

【사건번호 2019-012】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함)
  - \* 지정형태, 설립연도, 법적형태, 활동유형, 인력현황, 재정현황 등
-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연구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학술연구 목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상대로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 데이터는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통계법 제33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공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신청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 현황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아래의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음(동조 제1항 및 제2항)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조 제2항 각호)

**참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혜택<sup>1)</sup>**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2020.12. 이후에는 기재부장관 지정 법인만 가능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며(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 2020.12. 이후에는 기재부장관 지정 법인만 가능
-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 우선지원, 공공시설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이 때 신청서와 함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 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2018, 8쪽.

- 신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동조 제4항)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2호),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 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동조 제6항)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전문예술 법인·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sup>2)</sup>,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 제출자료와 같은 설문 조사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홈페이지에 전문 예술법인·단체의 기본정보를 게시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발간 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9년 주요사업 설명자료 참조

## 지정현황

지정현황 통계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홈 > 지정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현재 전체단체 수는 1242 개 단체입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다운로드

세부검색조건

지역  지역선택 적용

법적형태  지정형태  활동유형  세부장르  연차보고서

단체명  검색

번호	단체명	법적형태	장르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사회적기업
1242	(사)21세기청년작가협회	사단법인	미술/시각예술			
1241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단법인	전통	-		
1240	(사)강숙자 오페라라인	사단법인	음악			
1239	(사)강원서예여성협회	사단법인	미술/시각예술	-		
1238	(사)강원소리진흥회	사단법인	전통	-		
1237	(사)강원오페라단	사단법인	음악			
1236	(사)강원해오름오페라단	사단법인	음악	-		
1235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 보존회	사단법인	전통			
1234	(사)강화자베세트오페라단	사단법인	음악			

<피신청인 홈페이지>

###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법인·단체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서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
  -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동 조항의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으로(대법원 2004두12629),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지 못한 행정예규 등은 근거가 될 수 없음(대법원 2003두8395)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통계법 제33조는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데이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보(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와 범위가 거의 동일하여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되고 그 과정에서 알려진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자료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시 통계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아래와 같이 타당성을 검토함
  - 통계법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라는 개념을 두고,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및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통계법 제31조)
    -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함(제3조제4호)
    - \*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함(제3조제7호)
  -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31조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31조제2항)
  -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
    - \* i)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ii)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상호·업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제31조제2항각호)
  - 관련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통계법 제31조 등은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취득·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통계조사로 기초자료를 연계·가공하여야 산출되는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통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중앙행심 2013-08364(2013.9.24.재결))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노동조합현황, 산업재해현황, 장애인고용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2018-007, 008)에서, 해당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법령상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한 행정자료(통계법 제3조제7호)로 보아야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 대상이라 판단한 바 있음

-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및 경영 활성화 사업 수행을 위해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서 통계법상 통계자료보다는 행정자료에 가까워 보이며 통계법 제31조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 주장 외에도, 이 사건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데이터로서 제공이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 또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됨(제9조제1항제7호각목)
  - 신청인은 법인 또는 단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데이터가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데이터를 조합하는 경우 법인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가 법인 등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명칭을 비식별화하며, 그 중 법적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설립연도를 10년 단위로 범주화하며, 분류는 최초~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년~2019년으로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활동실적 중 세부실적은 제외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 위원회 사실조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와 관련하여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작성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데이터는 통계 목적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법인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수집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통계법을 근거로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에 전문예술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정보의 주체가 되는 법인·단체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조정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데이터를 비식별화 및 범주화 하여 제공할 경우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5. 조정결과

- 조정성립